제52.1호

행 정 명 령

백신 접근과 관련된 연방 조치로 인한 뉴욕주의 재난 선포 연장

연방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국,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관리 및 백신에 관한 연방법 관리를 포함하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해당 기관의 중요한 기능과 관련하여 공중 보건에 위배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기 **때문에,**

연방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뉴욕의 약국은 코로나19 백신 투여를 제한하여 예방을 통해 공중 보건과 안전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능력을 위태롭게 했기 **때문에,**

저는 주 정부가 공중 보건과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9월 5일에 연방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뉴욕주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52호를 발표했기 **때문에,**

연방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지원하는 주정부의 능력을 계속 위태롭게 하기 **때문에,**

이에 따라 본인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제2-B조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, 주 전역에 걸친 재난 비상 명령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확인하며, 행정명령 5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 재난 비상 사태를 연장하고 여기에 포함된 약관, 조건 및 정지 조항을 2025년 11월 2일까지 계속합니다.

이천이십오년 시월
3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
날인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